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23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5.

발 의 자 : 이만희 · 김기웅 · 서천호
이성권 · 구자근 · 강선영
진종오 · 이종배 · 박덕흠
윤영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,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신선농·수·축산물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납품업자등이 다시 회수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, 그 납품업자등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대금 지급 지연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상품이 신선농·수·축산물인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,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을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(안 제8조 및 제41조제5항).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상품이 신선농·수·축산물인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

다만, 상품이 신선농·수·축산물인 경우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

제41조제5항 중 “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66조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자
2.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66조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) 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직매입거래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)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 1. ~ 3. (생략)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 ③ · ④ (생략)	제8조(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상품이 신선농·수·축산물인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상품이 신선농·수·축산물인 경우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41조(과태료) ① ~ ④ (생략) ⑤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	제41조(과태료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<u>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66조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⑥ (생 략)	<u>해당하는 자</u>----- -----. 1.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자 2.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66조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⑥ (현행과 같음)
---	--